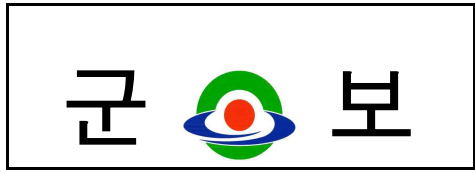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17호 2024. 3. 25.(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10호)
-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11호)
-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12호)

규 칙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34호)

공 고

- 용두천 재해복구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4-648호)
-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650호)
- 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656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10호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7.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8.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9.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나.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1.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또는 폐쇄된 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을 정상 유지하고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3. “이전”이란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예천군 외의 지역에서 예천군 내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4.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15. “상시고용인원”이란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최근 1년 평균인원을 말한다.
16. “입지보조금”이란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부지매입비, 분양가액 또는 임대료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7. “시설보조금”이란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8. “고용보조금”이란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 인원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9.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1. “문화·지식서비스사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2.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3.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24. “대학”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25.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6. “비축토지”란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구성 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 과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수가 지정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예천군의회 의원
3. 지역 경제인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비축토지 취득 및 처분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자문관 활용)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등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할 때는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드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때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원할 때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투자 지원 대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14조의2(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할 때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할 때

제4장 국내기업 투자의 지원

제15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군수는 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하여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6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1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

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입지시설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의 입지보조금
2.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협의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가 지원할 때는 도지사가 결정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

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가 지원할 때는 도지사가 결정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100만원씩 기업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등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부지매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국내기업 지원 대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1. 제15조에서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2.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단순 이전이나 기존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제외한다.

제22조(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군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분양받는 최초 입주기업에게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가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양가 지원은 제18조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3조(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공공기관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공공기관 또는 대학이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립할 때는 투자금액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규모 및 시기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5조(교육연수 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교육연수 시설(공공연수원, 기업체 연수원 등)이 관내에 신규로 설립할 때는 투자금액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수도권 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5장 투자유치진흥기금

제27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보 칙

제29조(금융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시 : 최고 100억원까지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500명 미만 시 : 최고 500억원까지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시 : 최고 1,000억원까지

-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④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의 규모와 지원방법은 협의회 심의 및 예천군의회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 ⑤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서비스사업 투자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 문화·지식서비스사업 또는 물류사업 등을 경영하기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금액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을 협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때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군수는 서비스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30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에 해당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가 지원할 때는 도지사가 결정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같은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등 부지 안에 자급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는 시설비의 3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비축토지 취득·처분 등) ① 군수는 투자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비축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비축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 및 투자실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실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신청인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 비축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그 밖에 개발에 든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조성원가의 100분의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감정평가나 분할 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비축토지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모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일반재산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비축토지 관리책임) 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축토지 재산관리관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비축토지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비축토지의 사후관리) ①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은 공급받은 비축토지를 군수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축토지를 공급할 때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비축용 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때는 군수 또는 군수가 선정한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우선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때 비축토지 양도가격은 공급가격에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군 공급예금 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격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때 건축물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⑦ 군수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의 투자실행 등의 이행 확보를 위해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부지매입 등의 업무 대행) ① 군수는 투자기업 사업시행자가

부지나 건물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요청할 때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시행자와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할 때는 대행 업무의 범위와 대행 시 드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업무 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④ 업무 대행에 드는 경비는 예천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제35조(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기업 지원 및 육성) ① 군수는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사업
2. 관내 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3. 관내 기업의 우수제품 발굴·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4. 관내 기업의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5. 관내 기업의 근로안전을 위한 근로환경 및 복지환경 개선 지원사업
6. 관내 기업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7. 관내 기업의 물류비 지원사업
8. 근로자들의 관내 전입을 위한 기숙사, 숙소 등 임차비 지원사업
9. 그 밖에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업

제37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할 때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외로 이전할 때
 8. 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할 때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10.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11.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할 때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중복지원의 금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1조(절차)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한다.

제42조(포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투자 활성화 및 기업 성장 도모와 고용 창출을 통한 국민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협의회 비상설화 등(안 제3조)

-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
- 위원 구성 대상 추가

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안 제11조, 제12조 및 안 제16조, 제17조)

- 보조금 신청 가능한 신규고용인원 기준 : 20명 이상⇒10명 이상

다. 이전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등(안 제19조)

- 보조금 신청 가능한 상시고용인원 기준 : 20명 초과⇒10명 초과
- 초과 인원 1명당 보조금 : 50만원⇒100만원

라. 국내기업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완화(안 제20조)

- 보조금 신청 가능한 신규고용인원 기준 : 20명 이상⇒10명 이상

마.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안 제21조)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의 기업이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의 기업이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

⇒ 중소기업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의 기업이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

바.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2조)

-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 일부를 지원
- 입지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사.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23조)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아. 공공기관 및 대학 유치를 위한 지원 조문 신설(안 제24조)

- 입지시설보조금 지원

자. 교육연수 시설 유치를 위한 지원 조문 신설(안 제25조)

- 300억원 이상 투자 시 최고 50억원까지의 입지시설보조금 지원

차.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 변경(안 제30조)

- 최고 100억원 지원⇒최고 1,000억원 지원
- 협의회의 심의 및 예천군의회 승인을 통해 지원 결정

카. 서비스사업 지원 조문 신설(안 제31조)

- 기존 관광사업에서 문화·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사업 추가
- 대규모 투자 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지원

타. 비축토지 취득, 처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33조 ~ 제33조의3조)

- 투자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축토지 취득
-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자의 투자실행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파. 부지 매입 등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34조)

- 투자기업의 부지, 건물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 요청시 협약을 체결하여 대행 가능

하.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36조)

- 관내 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11호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융자추천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관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3. “운전자금”이란 원자재비,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의 대출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이차보전금의 지급대상은 매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군 관내 소재 업체로서 군비 이차보전분으로 한다.

제4조(융자추천 신청 등)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③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제5조(이차보전 지원범위) 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보전 기간은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②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군수의 용자지원 계획에 의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이차보전금은 용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반기별로 지급 신청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중지 등) 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았을 경우
3.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 소재지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변경 사항의 통보) 용자금을 받은 업체는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차보전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전자금 융자신청 및 이차보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예천군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금 이차 보조금 지급 조례
⇒ 예천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나. 이차보전금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지급대상 : 예천군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지급금액 : 운전자금의 군비 이차보전금

다. 운전자금 융자신청 및 이차보전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5조)

- 매년 군수의 융자지원 계획에 따름

라.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이차보전금 반기별 지급신청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12호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것을 제외하고는”을 “것 외에”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의거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중심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나. 국가보훈부의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수수료의 감면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제3호 ~ 제9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추가

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전액 감면 사항 신설(안 제7조제1항제11호)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기존) 200원 → (신설) 전액 감면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5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34호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보조금) ①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투자규모 및 투자내용,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천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

를 해당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3. 공장 또는 연구소 등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제5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① 조례 제15조제1호에 따라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 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할 때는 조성 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 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 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할 때
2. 관내외 기업이 지정지구 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할 때

제6조(입지시설보조금 등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

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사 이전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국내기업 지원 대상) 조례 제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군이 추진하는 역점시책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협의회 심의를 거친 사업

제9조(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분양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지원) 조례 제29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대지원 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국내 기업

② 조례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에 한한다.

③ 조례 제30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사업 투자지원)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서비스사업 투자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년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상호협의하여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1조제7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운영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업, 관광유흥음식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업은 제외한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자료 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투자이행상황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 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업의 신청으로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 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서상의 이행준수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담보를 확보하여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연차별 투자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6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포상 대상은 민간인, 외국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포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후 3년 이내 투자금액으로 한다.

④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할 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기준

대상요건 (분양면적 기준)	보조금 지급율	비고
6,600m ² ~ 33,000m ² 미만	정상분양가의 최대 20%	
33,000m ² ~ 66,000m ² 미만	정상분양가의 최대 30%	
66,000m ² ~ 99,000m ² 미만	정상분양가의 최대 40%	
99,000m ² 이상	정상분양가의 최대 50%	

【별표 2】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항목	지 원 기 준	지원한도액 (억원)
관광, 물류사업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3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8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50
문화·지식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5명 이상	5
	총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10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6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2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50

【별표 3】

민간인 포상금 지급 및 공무원 포상 기준

1. 민간인 포상금 지급 기준 (US\$ 기준)

- 가. 1천만달러까지 : 0.30퍼센트
- 나. 1천만달러초과, 5천만달러까지의 부분 : 0.25퍼센트
※ $30\text{천달러} + (\text{투자유치금액} - 1\text{천만달러}) \times 0.0025$
- 다. 5천만달러초과, 1억달러까지의 부분 : 0.20퍼센트
※ $130\text{천달러} + (\text{투자유치금액} - 5\text{천만달러}) \times 0.002$
- 라. 1억달러를 초과하는 부분 : 0.15퍼센트
※ $230\text{천달러} + (\text{투자유치금액} - 1\text{억달러}) \times 0.0015$

2. 공무원 포상 기준 (US\$ 기준)

- 가. 1천만달러까지 : 포상금 0.05퍼센트
- 나. 1천만달러초과, 5천만달러까지의 부분 : 포상금 0.03퍼센트
※ $5\text{천달러} + (\text{투자유치금액} - 1\text{천만달러}) \times 0.0003$
- 다. 5천만달러초과, 1억달러까지의 부분 : 포상금 0.02퍼센트
※ $17\text{천달러} + (\text{투자유치금액} - 5\text{천만달러}) \times 0.0002$
- 라. 1억달러를 초과하는 부분 : 포상금 0.02퍼센트 및 특별승진
※ $27\text{천달러} + (\text{투자유치금액} - 1\text{억달러}) \times 0.0002$

3. 제출서류

- 가.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 나. 법인등기부등본
- 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 라.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 서류
- 마. 청구서

4. 기타사항

- 가. 투자유치금액은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자도입액을, 국내투자의 경우
실투자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나. 민간인 포상금의 총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공무원 포상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업명	국적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별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주소)		전화번호	
	업종(주생산업종)		이메일	
	법인설립일		공장등록일	

※ 고용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	투자내용	착공일		투자완료일	
		투자 기간		MOU 일자	
		경영하는 사업			
		투자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			
	외투기업	FDI도착금액		FDI도착일시	
	투자구분	※ 해당되는 투자구분 []에 √표를 합니다.			
		[]신규	[]증자	[]장기차관	
	고용현황	총인원	신규고용인원		기 고용인원
보조금 신청금액	금	천원[명]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1부 2.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군수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천군수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천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업명	국적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별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주소)		전화번호
	업종(주생산품)		이메일

※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	투자내용	신 고 일	
		경영하는 사업	
		투자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	
		사업개시일(예정일)	
	투자구분	※ 해당되는 투자구분 []에 √표를 합니다.	
		[]신규 []증자 []장기차관	
	설립(이전)일		상시 고용인원
			총원[명], 교육훈련대상인원[명], 교육훈련제외인원[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 지급금액
			금 원
	보조금 신청금액		금 천원[명]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 및 실적 증빙서류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4.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5.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등) 1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군수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천군수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천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지 ☐시설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별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주소)		전화번호
	업종(주생산업종)		이메일

※ 입지시설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	입주유형	[]분양(매입)		[]임대		
	입지유형	[]개별입지		[]계획입지		
	투자지역					
	분양(임대) 면적		m ²		공장용지 면적	m ²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 신고일				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	
	상시 고용인원					
	투자내역	과 목		투자금액		
		합 계		금	천원	
		부지매입비		금	천원	
		건축비		금	천원	
		시설장비 구입비		금	천원	
		기반시설 설치비		금	천원	
		기타		금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금	천원	금	천원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입지 ☐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5. 공장등록증명원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6. 표준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의 표준재무제표로 한정하고,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1부 9.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군수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원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천군수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천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업 이전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별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주소)		전화번호	
	업종(주생산물)		이메일	

※ 이전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입주유형	※ 해당되는 구분 []에 √표를 합니다.		
		[]창업	[]기존 공장이전	[]공장증설
	이전부문	[]본사 []공장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기타		
	분양(매입) 면적(㎡)		상시 고용인원	이전인원 신규채용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		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	명 명
	투자금액 내역	합계	금	천원
		부지매입(임대료)	금	천원
		건축비	금	천원
		시설장비 구입비	금	천원
기반시설 설치비		금	천원	
기타	금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이전보조금	금	천원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업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4.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5.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및 공장폐쇄 확인서 1부 6. 표준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의 표준재무제표로 한정하고,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10. 그 밖에 이전시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군수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원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천군수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천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별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주소)			전화번호			
	업종(주생산품)			이메일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	입주유형	[]분양(매입)		[]임대			
	입지유형	[]계획입지		[]개별입지			
	입주업종(주생산품)						
	기존 공장 소재지						
	시설투자 현황	투자유형	[]신규 공장 신설		[]기존 공장부지내 증설		
		신규 투자지역					
		분양(매입)면적 또는 임대면적 m²			공장용지면적 m²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			공장착공일(준공예정일)		
	상시 고용인원	기존[명]			신규[명]		
투자금액 (천원)	합계	부지매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기타	
보조금 신청금액	금 천원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4. 임주계약 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5. 건축물관리대장 1부 6.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증설투자 전·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1부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군수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원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천군 수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천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별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주소)				전화번호				
	업종(주생산품)				이메일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	입주유형		[] 기존 공장 이전			[] 신규 공장 신설			
	입주업종(주생산품)								
	기존 공장 소재지								
	공장 소재지(산업단지명)								
	투자 현황	담보방법		[] 이행보증보험증권 [] 가등기 [] 저당권 설정					
		분양가		원/m²		남부방법		년거치 분할상환	
		분양(매입)면적 m²			공장용지면적 m²				
	분양계약체결일			공장착공일(준공예정일)					
	상시 고용인원		기존[명]			신규[명]			
	투자금액 (천원)	합계		부지매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보조금 신청금액		금 천원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4. 입주계약 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5. 분양가 지원사업 담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7. 공장등록증명원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1부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군수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원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천군 수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천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별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주소)		전화번호			
	업종(주생산업종)		이메일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	입주유형	[]분양(매입)		[]임차		
	입지유형	[]계획입지		[]개별입지		
	입주업종(주생산업종)					
	기존 공장 소재지					
	시설투자 현황	신규 투자지역				
		분양(매입)면적 또는 임차면적		공장용지면적		
		m ²		m ²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		공장착공일(준공예정일)	
	상시 고용인원	기존[]명		신규[]명		
	투자금액 (천원)	합계	부지매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금 신청금액	금	천원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공장등록증명원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4. 입주계약 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5.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6.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표준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의 표준재무제표로 한정하고,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8.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투자이행각서 1부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군수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원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천군수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천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비스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별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주소)		전화번호
	업종(주생산업종)		이메일

※서비스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	사업계획 승인일		서비스사업 등록일		공사 착공일		
	서비스사업 종류						
	업종						
	시설규모						
	상시 고용인원	기존[명]		신규[명]			
	투자금액 (천원)	합계	부지매입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기타
보조금 신청금액	금	천원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서비스사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각 1부 4. 건축물관리대장 1부 5.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1부 6.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8. 표준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의 표준재무제표로 한정하고,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1부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군수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원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천군수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천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별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주소)		전화번호
	업종(주생산업종)		이메일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	설치 소재지			
	장소			
	신재생에너지 설비종류 및 규모	태양광(풍력, 연료전지) kW		
	시공자		설치 사업비	
	설치면적	m²	설치 완료일	
	설치 목적			
	설치 사업비	금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금	천원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원 1부 3.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서 1부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급용 사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5. 설치현장 사진 1부 6.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7.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도면 1부 8.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1부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군수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원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천군수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천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별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주소)		전화번호
	업종(주생산업종)		이메일

※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	설립일			
	업종(주생산업종)		업종코드	
	재무상태	자산[백만원]	부채[백만원]	자본[백만원]
	매출규모(직전년도)		종업원수	
	외국자본 유치희망금액			
	유치방법			
	신청금액	금 천원	자기부담액	금 천원
	사업계획 개요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이웃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기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군수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원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천 군수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천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 해당되는 구분 []에 √표를 합니다.				
보조금 구분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입지시설보조금
	[] 이전보조금		[] 기존기업 투자지원 보조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 산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 서비스기업 투자지원 보조금	[] 투자유치활동 지원 보조금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별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주소)		전화번호	
	업종(주생산품)		이메일	
※ 보조금 정산서 제출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보조사업내용	사업명			
	총 투자기간		금회 투자기간	
	투자내용			
	투자계획	금	천원	
	금회 투자금액	금	천원	
	고용계획		신규고용 인원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정산내역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사업추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생년월일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투자유치 포상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투자유치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		
	법인소재지		공장소재지		
	업종		전화번호		
	부지면적		건축면적		
	투자금액		투자기간		
	고용계획 인원		MOU 체결내역		
유치기업 항목별 투자 내역	구분		합계	MOU체결 1년간	MOU체결 1년 이후
	투자실적(천원)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기타			
	고용인원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					
소속	성명	주요 역할	기여도(%)	확인	
				(인)	
				(인)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공장등록증명원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5.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군수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원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천군수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천군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정이유

-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투자 활성화 및 기업 성장 도모와 고용창출을 통한 국민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기준 신설(안 제10조, 안 별표 1)

- 분양가의 최대 50% 지원

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범위 변경(안 제12조)

- 투자금액 및 상시 고용인원 조건 완화
 - 외국인 투자기업 : 상시고용인원 500명⇒100명(투자금액은 1억 달러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
 - 국내기업 : 투자금액 1천억원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투자금액 3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다. 서비스사업 투자 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안 제13조, 안 별표 2)

- 관광·물류사업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및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일 때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 문화·지식서비스사업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및 상시고용인원 25명 이상일 때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라.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대상 기업기준 변경(안 제15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

마.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기준 마련(안 제16조)

-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5년 확보 조치

용두천 재해복구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23년 집중호우 재해복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용두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예 천 군 수

1. 사업 개요

- 사업의종류 : 재해복구사업(2023년 집중호우 재해복구)
- 사 업 명 : 용두천 재해복구사업
- 사업예정지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두성리 ~ 은풍면 우곡리 일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2.4km, 교량 1개교 등
- 사업시행자/주소 : 경상북도지사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사 업 기 간 : 2024년 1월 ~ 2026년 8월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기간 : 2024. 3. 25. ~ 4. 8.(15일간)
- 열람장소 : 경북도청 하천과, 예천군 안전재난과·효자면·은풍면

3. 의견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열람 기간 내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의견서 제출

4. 보상 대상 및 시기

- 보상대상 : 불임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와 같음
- 보상시기 : 2024년 5월경 보상추진 예정

5. 보상 방법 및 절차

- 보상방법 : 감정평가업자(2~3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현금보상[계좌입금])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보상협의회 구성 → 감정평가업자 추천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
 - ① 협의(계약서체결시) → 소유권이전 → 보상금 지급
 - ②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신청(토지수용위원회)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수용재결 심의(토지수용위원회) → 보상금 공탁 →
소유권 이전
-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6. 기타사항

-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 통보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안전재난과(☎054-650-6449) 및 경상북도 하천과 (☎054-880-4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① 사업명	용두천 재해복구사업	
②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③ 의견	(※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용두천 재해복구사업 보상계획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 추천업자 :
- ☐ 추천 일 : 2024. . .

연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읍면	리			공부상 면적 (㎡)	편 입 면 적 (㎡)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기재한 후 인감날인 하셔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또한,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 등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천 군 수 귀하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	효자	도촌	333	단독주택	컨테이너	㎡	17.1	유*순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왜관신용협동조합	등,현)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	근저당권	채무자 (옥*성)
1-2	효자	도촌	333	창고	컨테이너	㎡	17.1	유*순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왜관신용협동조합	등,현)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	근저당권	채무자 (옥*성)
1-3	효자	도촌	333	단독주택	황토벽돌구조 /아스팔트싱글	㎡	16.8	유*순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왜관신용협동조합	등,현)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	근저당권	채무자 (옥*성)
1-4	효자	도촌	333	단독주택	컨테이너	㎡	43.5	유*순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왜관신용협동조합	등,현)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	근저당권	채무자 (옥*성)
2-1	효자	도촌	333-1외 1필지	판매시설	조립식판넬	㎡	165.3	상리도촌가재봉마을회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박*환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길 ***-**	대표자	
2-2	효자	도촌	333-1외 1필지	화장실	조립식판넬	㎡	1.7	상리도촌가재봉마을회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박*환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길 ***-**	대표자	
3-1	효자	도촌	333-5	일반음식점	경량철골구조	㎡	108.5	상리도촌가재봉마을회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박*환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길 ***-**	대표자	미등기
3-2	효자	도촌	333-5	소매점	경량철골구조	㎡	38.5	상리도촌가재봉마을회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박*환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길 ***-**	대표자	미등기
4	은풍	우곡	449-1	기타창고시설	경량철골구조	㎡	33.0	전*탁	건축물대장)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내동길 ** 현)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내동길 **				미등기
합계							441.5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효자	도촌	692	천	33471.0	13922.0	국	국(건설부)				
2	효자	도촌	583-4	답	579.0	157.0	공	예천군				
3	효자	도촌	588	구	1344.6	1035.0	국	국(농림부)				
4	효자	도촌	333-4	전	461.0	461.0	유*순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왜관신용협동조합	등,현)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안로 ***	근저당권	채무자 (옥*성)
5	효자	도촌	333	대	300.0	300.0	유*순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왜관신용협동조합	등,현)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안로 ***	근저당권	채무자 (옥*성)
6	효자	도촌	333-3	도	206.0	206.0	상리도촌가재봉 마을회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박*환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길 **~**	대표자	
7	효자	도촌	333-1	대	472.0	472.0	상리도촌가재봉 마을회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박*환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길 **~**	대표자	
8	효자	도촌	333-2	대	99.0	99.0	상리도촌가재봉 마을회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박*환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길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길 ***~**	대표자	
9	효자	도촌	333-5	대	419.0	419.0	상리도촌가재봉 마을회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박*환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길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길 ***~**	대표자	
10	효자	도촌	689	도	23.0	23.0	국	국(건설부)				
11	효자	도촌	334	차	281.0	281.0	상리도촌가재봉 마을회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박*환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길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길 ***~**	대표자	
12	효자	도촌	333-6	차	995.0	995.0	상리도촌가재봉 마을회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박*환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길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길 ***~**	대표자	
13	효자	도촌	335	차	1825.0	1825.0	상리도촌가재봉 마을회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	박*환	등)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길 **~** 현)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길 ***~**	대표자	
14	효자	도촌	602-1	답	91.0	91.0	박*진	등)예천군 상리면 도촌동 *** 현)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				
15	효자	도촌	602-2	답	48.0	48.0	박*진	등)예천군 상리면 도촌동 *** 현)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				
16	효자	도촌	601-1	답	17.0	17.0	남*하	등)예천군 상리면 도촌동 *** 현)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				
17	효자	도촌	588-6	구	180.1	180.1	국	국(농림부)				
18	효자	도촌	554-2	도	69.0	14.0	경상북도	경상북도				
19	효자	도촌	587-5	도	736.4	112.0	국	국(농림부)				
20	효자	도촌	599-1	답	84.0	84.0	이*희	등)예천군 상리면 도촌동 *** 현)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				
21	효자	도촌	485-3	답	28.6	28.6	박*희	등)영주시 휴천동 ***~** 현)경상북도 영주시 목민로14번길 *-* (휴천동)				
22	효자	도촌	489-5	답	17.6	17.6	이*춘	등)예천군 상리면 도촌동 *** 현)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				
23	효자	도촌	588-14	구	870.3	309.0	국	국(농림부)				
24	효자	도촌	587-8	도	1306.9	420.0	국	국(농림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5	효자	도촌	509-1	유	956.0	956.0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				
26	효자	도촌	682-1	구	83.0	83.0	국	국(농림부)				
27	효자	도촌	490-4	천	483.0	442.0	공	예천군				
28	효자	도촌	490-5	천	657.0	37.0	공	예천군				
29	효자	도촌	588-12	구	153.2	70.0	국	국(농림부)				
30	효자	도촌	493-1	잡	2179.7	5.0	공	예천군				
31	효자	도촌	528-1	천	49.0	49.0	공	예천군				
32	효자	도촌	491-3	유	4736.5	114.0	공	예천군				
33	효자	도촌	529-5	천	154.0	84.0	공	예천군				
34	은풍	송월	162-1	답	839.0	839.0	박*중	등)예천군 하리면 송월동 ***				
35	은풍	송월	162-5	구	170.0	170.0	한국농어촌공사	현)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				
36	은풍	송월	162-4	답	859.0	859.0	박*중	등)예천군 하리면 송월동 ***				
37	은풍	송월	162-2	도	83.0	83.0	공	예천군				
38	은풍	송월	162-3	답	179.0	179.0	공	예천군				
39	은풍	송월	664	도	43.0	43.0	국	국(건설부)				
40	은풍	송월	138-1	구	1953.6	463.0	국	국(농림부)				
41	은풍	송월	138-2	도	3533.5	42.0	국	국(농림부)				
42	은풍	송월	656	천	56836.0	10440.0	국	국(건설부)				
43	은풍	송월	159	구	2495.4	596.0	국	국(농림부)				
44	은풍	송월	159-1	도	1133.7	10.0	국	국(농림부)				
45	은풍	송월	159-2	구	1389.8	393.0	국	국(농림부)				
46	은풍	송월	154-1	도	1181.1	27.0	국	국(농림부)				
47	은풍	송월	158-1	답	27.7	27.7	전*섭	등)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97 동양아파트 *-***				
48	은풍	송월	156-3	답	504.0	504.0	전*섭	현)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417번길 35 (청천동, 동양아파트)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9	은풍	우곡	635-9	천	75746.0	24359.0	국	국(건설교통부)					
50	은풍	우곡	417-1	답	271.0	271.0	류*현	등,현)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52-10, **동 ***호(태성빌라)					
51	은풍	우곡	419	답	1078.0	1078.0	최*녀	등)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1** 현)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					
52	은풍	우곡	418	답	539.0	539.0	류*화	등,현)경상북도 영주시 신재로12번길 56, ***동 ***호(가흥동,화성리버빌)					
53	은풍	우곡	435-7	답	120.0	120.0	송*녀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내동길 **					
54	은풍	우곡	436-4	답	135.0	135.0	최*재원	등)예천군 하리면 우곡동 *** 현)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내동길 **					
55-1	은풍	우곡	453-4	답	449.0	449.0	권*희	등)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 현)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	윤*영 예천군	등)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 현)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	채권보전(대위자)	지분 3/15	
55-2						이진*	등)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 현)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	지분 2/15					
55-3						이종*	등)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 현)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	이진*지분압류			지분 2/15		
55-4						이수*	등)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63 강선마을 ***-**** 현)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74 (주엽동) ***-****				지분 2/15		
55-5						이태*	등)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93-7 세종개나리아파트 *-**** 현)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3길 3-8 (세종개나리아파트) *-****				지분 2/15		
55-6						이동*	등)광양시 금호동 826 송죽아파트 *-**** 현)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135 (금호동, 송죽아파트) *-****	희망모아유동화 전문유회회사			등,현)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진*지분가압류	지분 2/15
55-7						이*숙	등)서울 성북구 길음동 ***-**** 현)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25-3 (길음동) ***-****						지분 2/15
56-1	은풍	우곡	453-5	답	6.0	6.0	권*희	등)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 현)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	상 동				지분 3/15
56-2						이진*	등)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 현)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	지분 2/15					
56-3						이종*	등)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 현)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	지분 2/15					
56-4						이수*	등)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63 강선마을 ***-**** 현)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74 (주엽동) ***-****	지분 2/15					
56-5						이태*	등)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93-7 세종개나리아파트 *-**** 현)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3길 3-8 (세종개나리아파트) *-****	지분 2/15					
56-6						이동*	등)광양시 금호동 826 송죽아파트 *-**** 현)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135 (금호동, 송죽아파트) *-****	지분 2/15					
56-7						이*숙	등)서울 성북구 길음동 ***-**** 현)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25-3 (길음동) ***-****	지분 2/15					
57	은풍	우곡	439-1	답	65.0	65.0	김*균	등)영주시 영주동 ***- 현)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73번길 *-* (영주동)					
58	은풍	우곡	650	구	853.0	5.0	국	국(농림부)					
59	은풍	우곡	440-4	과	10.0	10.0	김*흠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내동길 ***-	대구경북농금 농업협동조합	등)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 (신천동)(안동지점) 현)경북 안동시 광명로 *** 옥동트윈빌딩	근저당권, 지상권		
60	은풍	우곡	649-7	도	4328.0	750.0	국	국(건설교통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1	은풍	우곡	662	도	1349.0	327.0	국	국(건설부)				
62	은풍	우곡	452	천	436.0	436.0	추*업	등)대구부 수정 ** 현)대구광역시 중구 수동 **				
63	은풍	우곡	654	구	8713.0	837.0	국	국(농림부)				
64	은풍	우곡	451	천	159.0	159.0	전*탁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내동길 **				
65	은풍	우곡	675	도	60.0	60.0	국	국(건설부)				
66	은풍	우곡	449	도	138.0	138.0	공	예천군				
67	은풍	우곡	450-2	도	291.0	34.0	국	국(건설부)				
68	은풍	우곡	450-3	도	271.0	113.0	공	예천군				
69	은풍	우곡	450-1	답	364.0	364.0	전*탁	등,현)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내동길 **				
70	은풍	우곡	449-1	답	708.0	708.0	전*탁	등)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				
71	은풍	우곡	450-4	도	277.0	229.0	국	국(건설부)				
72	은풍	우곡	197-1	답	1158.0	1158.0	박*영	등,현)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1길 14-14, ***호 (용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달서지사) 현)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 (송림타워 7,8,9층)	압류	
73	은풍	우곡	197-4	도	32.0	32.0	박*환	등)예천군 하리면 우곡동 *** 현)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				
74	은풍	우곡	652	도	1111.0	811.0	국	국(건설부)				
75	은풍	우곡	197-3	답	1479.0	1479.0	이*동	등)예천군 하리면 우곡동 *** 현)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				
76	은풍	우곡	197-5	도	88.0	78.0	국	국(건설부)				
77	은풍	우곡	198-1	잡	193.0	193.0	김시환	등)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내동길 ***-				
78	은풍	우곡	196-2	답	485.0	485.0	이*창	등)울산시 영포동 ***-*** 현)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				
79	은풍	우곡	196-5	도	103.0	58.0	국	국(건설부)				
80	은풍	우곡	196-3	도	793.0	451.0	공	예천군				
81	은풍	우곡	193	도	20.0	20.0	안*철	토지대장)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 현)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				미등기
82	은풍	우곡	657	도	4216.0	91.0	국	국(건설부)				
83	은풍	우곡	168-3	도	84.0	9.0	예천교육구	등)예천교육구 현)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양지9길 6 호명빌딩 3~4층 예천교육지원청				
84	은풍	우곡	167-1	제	261.0	160.0	공	예천군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5	은평	우곡	166-5	제	100.0	50.0	공	예천군				
86	은평	우곡	635-8	제	223.0	92.0	국	국(건설교통부)				
합계					231315.7	74391.0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현[現]법령에 맞게 현실화하여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 「예천군 지능정보화 조례」

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삭제

다.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변경 수립(안 제4조)

라.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업무 규정(안 제5조)

-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

마.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및 지능정보화사업 지원 규정(안 제9조 ~ 제13조)

-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군민 정보화 교육 사업,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 지원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홍보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junior1233@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홍보소통과

3) 팩스 : 054-650-60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홍보소통과(전화: 054-650-60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예산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천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참여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화사업의 지원) 군수는 군민의 정보화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군민 정보화 교육 사업
2.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
3.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정보화마을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교육, 워크숍, 회의 및 행사 등에 대한 참석자 실비 지원
5. 그 밖의 지능정보화 활성화 사업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 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예 천 군



1. 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계획 수립 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예천군민의 의견 수렴

나. 재정, 운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등에 재정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운행 지원

다.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
-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업무 위탁 가능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angsh41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3) 팩스 : 054-650-61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전화 : 054-650-65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예천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천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이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

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
· 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